

<체험형 인턴 채용가점 세부내용>

□ 법정가점

구 분	가점	비고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	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(서류·면접전형 만점의 5% 또는 10%)	증빙서류* 제출자에 한함
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		
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		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		
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		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		

*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

【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가점부여 시 유의사항】

- ◆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단위 선발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
- ◆ 관련 법령에 따라 모집인원 4명 이상 직렬에 한하여 가점 적용(단, 모집인원 3명 이하라도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)
- ◆ 취업지원 대상자의 가점은 매 전형 점수가 4할 이상 득점자 한하여 적용
- * 세부내용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름

□ 특별가점

구 분	가점	비고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	서류·면접전형 만점의 3% 또는 5%	증빙서류* 제출자에 한함
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	서류·면접전형 만점의 5%	

* (의사상자 및 유가족) 의사상자 증명서, 유족증 및 가족관계증명서
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의사상자(본인), 의사자의 배우자·자녀는 서류·면접전형 만점의 5% 부여, 의사자의 배우자·자녀는 서류·면접전형 만점의 3% 부여

* (장애인) 장애인증명서. 단,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 가점을 적용 받고자하는 자는 국가유공자증,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상이등급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장애인 특별가점 적용 가능

(※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만 제출할 경우, 상이 등급 확인이 불가하므로, 반드시 상이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도 제출)

□ 청년

구분	가점	비고
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2조, 제5조, 제6조 등에 따라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(임용예정일 기준 청년인 자) *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제대군인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- 군복무기간 1년 미만: 1세 / 1년 이상 2년 미만: 2세 / 2년 이상: 3세	서류전형 만점의 5%	증빙서류* 제출자에 한함

* 주민등록초본(주민번호 뒷자리 및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)

□ 저소득층

구분	가점	비고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생계, 주거, 교육,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	서류전형 만점의 5%	증빙서류* 제출자에 한함

* 수급자 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 등

□ 북한이탈주민

구분	가점	비고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	서류전형 만점의 5%	증빙서류* 제출자에 한함

*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
□ 다문화 가정 자녀

구분	가점	비고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가족 자녀이며,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국어 구사가 자유로운 사람	서류전형 만점의 5%	증빙서류* 제출자에 한함

* ① 가족관계증명서, ②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, ③ 부 또는 모(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) 명의의 기본증명서(혼인한 외국인의 前 국적 표시), 혹은 부 또는 모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각 1부

□ 자립준비청년

구분	가점	비고
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·아동복지시설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)	서류전형 만점의 5%	증빙서류* 제출자에 한함

*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수당수급자 확인서 등

※ 상기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는 채용공고시작일('25.6.5.)이후 발급분만 인정함

※ 상기 우대사항 가점은 각 항목별(법정가점, 특별가점 등) 가점은 합산이 가능하며 최대 15% 내에서 적용(각 항목 내 중복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하나만 인정), 전형단계별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점 적용함

* 서류전형의 경우, 자기소개서 적격인 자에 한하여 적용